

##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 영업부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전년도에 이어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발주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합원도 수주 공사에 대한 선급금 수령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2010년 8월 16일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할 때 조합원이 수령하는 선급금 중 일부를 조합과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께서는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합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통한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0년 경영목표를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보증·공제기관'으로 정하고 영업 배상책임공제사업 도입, 보증한도 증액, 소액보증의 효율인하 등 조합원 편의위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으로도 더 나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 공동관리 제도

### 가. 관리대상

(1) 선급금 공동관리제도의 대상은 공사건별로 계약금액대비 선급금 수령비율이 10% 이상이며, 신용등급별로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급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선급금 공동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등급별	AAA ~ A	BBB ~ B	CCC ~ C
기준금액(건당)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2) 공동관리금액 산출

- 공사건별로 공동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계약금액 대비 다음 표의 신용등급별 선급금 수령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산출예시〉

- 예 1) AA 등급의 경우 공사건당 선급금액이 10억원이고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수령비율이 10%인 경우  
⇒ 기준금액 5억원 이상 충족, 선급금 수령 비율 10% 이상 ~ 30% 미만에 해당

따라서 공동관리금액은 10억원 × 20% = 2억원

- 예 2) CCC등급의 경우 공사건당 선급금액이 1억원이고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수령비율이 20%인 경우  
⇒ 기준금액 2억원 이상 미충족, 선급금 수령비율 10% 이상 ~ 30% 미만에 해당  
따라서 공동관리 대상이 아님

### 나. 관리방법

- 조합원명의 공동계좌(조합 및 조합원 인감날인)를 개설하여 선급금을 수령한 후, 조합원명의 정기예금이체와 동시에 조합에 질권설정하여 관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2. 공동관리 절차 및 방법”에 나와있습니다.

## 2. 공동관리 절차 및 방법

- ① 보증 신청시 “선급금공동관리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② 조합원 명의의 조합원 인감이 등록된 임시계좌를 개설합니다.
  - 임시계좌란?
  - 보증채권자가 입금한 선급금을 질권설정할 정

신용등급별 선급금 수령 비율	AAA ~ A	BBB ~ B	CCC ~ C
10%이상~30%미만	20%	30%	40%
30%이상~40%미만	25%	35%	45%
40%이상~50%미만	30%	40%	50%
50%이상~60%미만	35%	45%	55%
60%이상	40%	50%	60%

기예금 계좌에 입금하기 위한 '계속사용이 가능한 계좌' 로써, 보증서 발급시 특기사항 란에 선급금 입금계좌를 표기해야 하므로 필요한 계좌입니다.

※ 단, 선급금으로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 임시계좌에서 공동관리 대상금액을 정기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질권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질권설정시 조합원 편의를 감안하여 정기예금계좌를 2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개의 계좌로 질권설정을 하여도 가능합니다만, 공사 기성율이 20% 이상인 경우 공동관리금액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 예금을 해약한 후 잔액을 재입금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 예금 해약으로 인한 이자 감소분은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적용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선급금공동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등급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
- 공동관리 대상금액 이상의 물적담보(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를 제공하는 경우
- 선급금수령액 중 일부를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

건에 의하여 현금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선급금 공동관리 비율을 곱한 금액

(추후 하청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지급여부의 확인은 하청업체가 조합원에게 제출한 선급금 보증서 사본 및 입금영수증을 징구하여 확인)

〈산출예시〉

- ①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 50억원(AAA등급 선급금 수령비율 20%)
- ② 본 지침에 의한 공동관리금액 : 10억원
- ③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선급금 : 10억원
  - 공동관리 제외금액 : 2억원(반면, 공동관리 금액 : 8억원)
  - [10억원(③) / 50억원(①) × 100% = 20%(제외대상)]
- 계약조건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기타 공동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선급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 처리 방법

- 어음을 조합으로 배서하도록 하여 어음수탁통장에 보관하고, 반환기준에 도달시 조합원에게 반환해 드립니다.
  - 공동관리금액 반환 기준 도달 시점 이전에 어음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시점의 기성률을 감안하여 공동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여 드립니다.

- 조합원이 만기전 공동관리중인 어음을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동관리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당해 어음이 반환됩니다.

-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수수료 환불방법
  - 현금 예치시 : 예치기간 동안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액환불

## 5. 공동관리 선급금의 반환

### 가. 반환기준

기 성 률	반환금액
20% 이상	공동관리 금액의 50%
50% 이상	전액

### 나. 반환시 징구서류

선급금정산확인원 또는 공사기성확인원을 징구하여 기성률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 6. 보증수수료 정산

- 수수료는 일괄징수 후 선급금 정산 또는 담보 반환시 사후 정산해 드립니다.
- 선급금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정산하고, 선급금공동관리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건에 대하여는 그 담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별도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정산 환불해 드립니다.

〈산출예시〉

신용등급 : AA등급

선급금액 : 10억원

선급금 수령비율 : 10%

보증기간 : 540일

⇒ 기준금액 5억원 이상 충족, 선급금 수령비율 10% 이상 ~ 30% 미만에 해당  
공동관리금액은 10억원 × 20% = 2억원

- 보증서 발급시

⇒ “10억 × 보증기간/365 × AA등급 수수료 요율”의 수수료 징구

- 공동관리금액을 현금으로 제공시

보증서 발급시 일괄징수한 수수료에서 조합에서 담보하고 있는 공동관리금액에 대한 수수료 환불

⇒ 공동관리금액 1차 반환시

공동관리금액 2억에 대한 수수료 환불

⇒ 공동관리금액 2차 반환시

공동관리금액 1억에 대한 수수료 환불

- 예 · 적금 또는 부동산 등 담보 제공시 : 담보기간에 대한 AAA등급의 보증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정산 🇰🇷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가치 및 편익 증대를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합원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정책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이하 '조합')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조합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버튼 또는 「취소」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합은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회사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e-mail주소 등의 고객 기본정보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금융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과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회사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등
- 서비스제공에 따른 구매 및 요금결제시 금융거래본인인증 : 인증서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 로그인 ID, 접속일시, IP Address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www.seolbi.com)를 통하여 입력하신 내용만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고객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유 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제공된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이 집니다.

### 개인정보 제공

조합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고객님의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조합은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 (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고객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 결과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조합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기획부 정보지원팀  
전화번호 : 02-6240-1061  
이메일 : webmaster@seolbi.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을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납세증명서 징구범위 증대 안내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합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납세증명서 징구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징구대상 : 신용등급 A등급 이하 조합원으로서 건당 보증금액 2억원 이상인 계약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신용등급 AAA~AA 등급 조합원은 지점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행일자 : 2010. 9. 20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